#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96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김도읍・박성훈・장동혁

구자근 • 권영진 • 정점식

김형동 • 김희정 • 신동욱

인요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을 경우 개발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나.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사업이 실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구역의 지정을 폐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규정도 없음.

이로 인해 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지 아니하여 역세권개발구역으로의 행위제한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필요 시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

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ㆍ제3항 신설).

#### 법률 제 호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사가 완료되어 제22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 획구역은 해당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 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 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 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② 공사가 완료되어 제22조에      |
|                     |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      |
|                     | 우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된      |
|                     | <u> 것으로 본다.</u>       |
| <u> &lt;신 설&gt;</u> | ③ 제1항에 따라 역세권 개발구     |
|                     | 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      |
|                     | 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역세권       |
|                     |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
|                     |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
|                     |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       |
|                     | 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공사완   |
|                     | 료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환원      |
|                     | 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      |
|                     | <u>니한다.</u>           |
| ② (생략)              | <u>④</u> (현행 제2항과 같음) |